

---

# 중견기업 세제 건의

---

2023. 7. 11.

## 목 차

1. 일반 R&D(당기분) 세제지원 확대 ..... 1
2.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 .... 3
3. R&D·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 5
4.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 ..... 6
5. 디지털전환 투자 촉진 세제 신설 ..... 8
6. 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9
7.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 11
8.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 12
9. 면세 식료품 매입세액공제 개선 ..... 14
10. 상속세율 인하 ..... 15
11. 기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16
12.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18
13. 기업상속공제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 ..... 19
14. 기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 20
15.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조정 ..... 21
16. 정기 세무조사 용어 정비 ..... 22

##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당기분 방식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8~15%, 대기업 0~2%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감소세지만 후발 신흥국과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우주·항공, ICT 등 일부 신산업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분야별 기술 수준('20년)

[한국] 전체 80.1, 우주·항공·해양 68.4, 생명·보건의료 77.9, 에너지·자원 80.2, ICT·SW 83.0

[중국] 전체 80.0, 우주·항공·해양 81.6, 생명·보건의료 78.0, 에너지·자원 81.6, ICT·SW 85.7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18	'20	'18	'20	'18	'20	'18	'20	'18	'20
기술수준(%)	76.9	80.1	76.0	80.0	87.9	87.3	94.8	95.6	100.0	100.0
기술격차(년)	3.8	3.3	3.8	3.3	1.9	2.0	0.7	0.7	0.0	0.0
기술수준 그룹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선도	선도	최고	최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 기술수준평가, '21.4월

-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79.1%\*로 주요국 중 높은 수준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R&D 지원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주요국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중 : 한국 79.1%, 미국 73.9%, 일본 79.2%, 독일 68.9%, 프랑스 65.8%, 영국 66.6%, 중국 76.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 한편, 중견기업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설비투자과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 중견기업 설비투자/ 평균 신규 채용 추이 : ('16년) 23.2조 원/56.8명 → ('18년) 24.2조 원/40.4명 → ('20년) 19.0조 원/46.2명 → ('22년 계획) 14.5조 원/34.4명(중견기업 기본통계)

<중견기업 R&D 투자 추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R&D 투자금액(억원)	78,224	77,213	78,171	81,106

\* 중견기업 기본통계

- 그러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차에 따라 급격히 축소되어 연구개발 투자 확충이 용이하지 않음

\* 중소기업 25% → 중견 1~3년 차 15% → 중견 4~5년 차 10% → 중견 6년 차 이상 8%

- 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요인\* 1순위는 조세부담으로, 실제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18.0%)보다 높은 수준

\* 회귀 검토 요인 : 조세지원 축소 58.0%, 금융지원 축소 15.4%, 판로 제한 14.8% 順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법인세 실효세율('20년 신고기준) : 전체 17.5%, 상출 18.0%, 중견 18.3%, 중소 13.1%, 기타 21.1%(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첩)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필요

- R&D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소→중견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중견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R&D 투자 기반 마련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5% 상향 시 매년 8조 8,481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취업유발 인원 및 고용 유발 인원이 각각 138,187명, 99,322명에 달 할 것으로 추정(한국재정학회,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9.2월)

## □ 건의 내용

-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

- (1안)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

\* 공제율 : (現) 중소 25%, 중견 8~15%, 대 2% → (案) 전체 기업 25%

- (2안) 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공제율 상향

\* 중견기업 범위 : (現)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 (案) 2조 원 미만

\*\* 공제율 : (現) 중소 25%, 중견 8~15%, 대 2% → (案) 중소 25%, 중견 13~20%, 대 7%

##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중소기업 30~40%, 중견\* 25~40%, 그 외 기업 20~30%를 법인세에서 공제('24.12.31까지)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

-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 차 등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 지정하여 R&D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추이 : ('19년) 11개 분야, 173개 기술 → ('20년) 12개 분야, 223개 기술 → ('21년) 12개 분야, 235개 기술 → ('22년) 13대 분야, 260개 기술

- 그러나,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지원 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대다수(92.1%)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견기업 구간 적용이 어려운 상황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 432개 사(7.9%)(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활용 현황('19년)>

구 분	중소		중견		일반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625억원	11.1%	249억원	4.4%	4,751억원	84.5%
일반 R&D 세액공제	19,971억원	72.4%	2,228억원	8.1%	5,377억원	19.5%

\* 기획재정부,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1.9월

-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여부 및 상장시장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려움

- 조세특례제한법 내 세제지원 중 상장시장을 요건으로 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유일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5조)'는 신규 상장 중견기업에 대해 추가로 공제 하였으나 상장시장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지 않았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해 상장 여부에 대한 제한도 삭제된 상황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성장·원천 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 실익을 높이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유사 입법례 : 중견기업 기술력 향상 및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는 중견기업 지원 대상을 매출 5천억 원 미만으로 적용

## □ 건의 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현행) 매출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  
(건의) 전체 중견기업

### 3

## R&D·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차등 운영 중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현황(%)>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시설투자 등)			
	당기분			증가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2배 한도)
	중소	중견	그 외		중소	중견	그 외	
일반연구개발	25	<b>8~15</b>	2	중소50, 중견40, 그 외 25	10(12)	<b>5(7)</b>	1(3)	3(10)
신성장·원천기술	30~40	<b>25~40</b> (코스닥)	20~30	-	12(18)	<b>6(10)</b>	3(6)	3(10)
국가전략기술	40~50	<b>30~40</b>	30~40		25	<b>15</b>	15	4(10)
<b>중견 적용범위</b>	3년 평균 매출액 <b>5천억원 미만</b>				3년 평균 매출액 <b>3천억원 미만</b>			

\*    ( )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23년 1년간 한시 적용

-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R&D 및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세제지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
  -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6%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으로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지만, 현행 중견기업 구간은 매출 규모에 따라 R&D 및 투자 세제지원을 차등

### □ 건의 내용

- R&D 및 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매출액 2조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 4

# 국가전략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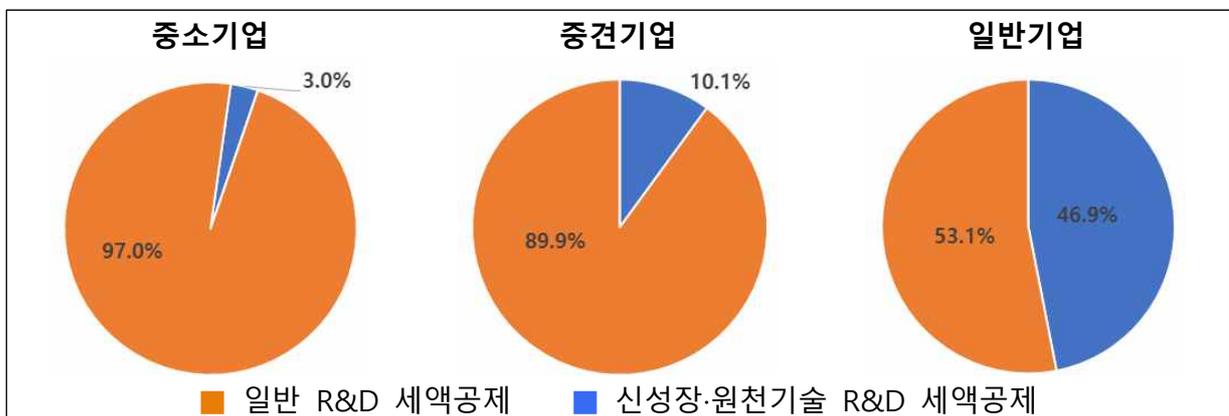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4항

###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공통 비용이 있는 경우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
  -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① 신성장 R&D와 국가전략기술 R&D 공통 시 : 신성장 R&D 비용
    - ② 그 외 경우 : 일반 R&D 비용으로 구분
  - 재료비 등 : 일반, 신성장,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인건비 기준으로 안분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을 병행 생산하는 경우 3개 과세 연도 동안 국가전략기술(신성장)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누적 생산량의 50%를 초과해야 국가전략기술(신성장)세액공제 적용
- 그러나 전체 R&D 세액공제에서 신성장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46.9%에 달하는 일반기업(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 R&D 비중은 각각 3.0%, 10.1%에 불과

< 기업 규모별 R&D 세액공제 금액 비중(조세특례 심층평가) >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인력 규모가 작아\* 신성장·원천기술 R&D 전담인력 배치가 용이하지 않으며 공통비용 발생이 불가피해 인건비에 대한 R&D 세액공제 안분이 필요
  - \* 중소기업 평균 R&D인력(2021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 11.0명(전체 인력의 4.3%)
- 특히 중소기업은 신성장-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공제금액\*\*이 타 기업군에 비해 미미한 수준
  - \* 중소기업 일반 R&D / 신성장 R&D 세액공제율/공제율 격차 : 25% / 30% / 5%
  - 중기업 일반 R&D / 신성장 R&D 세액공제율/공제율 격차 : 8% / 20% / 12%
  - \*\* 기업규모별 신성장, R&D세액공제 금액 : 중소기업 625억 원, 중견 249억 원, 일반 4,751억 원
- 또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상용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R&D 착수단계인 중소기업이 병행생산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 국가전략기술 생산제품이 3개 과세 연도 누적 생산량의 50%를 초과할 것
- 중소기업이 폭넓게 제도를 활용하여 신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적용방식을 개선할 필요

## □ 건의 내용

- 공통 인건비도 재료비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분
- 병행생산 시설에 대한 중소기업 사후관리요건 완화
  - (현행) 총생산량 대비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 비중 50% 이상 ⇒ (건의안) ① 대기업 50% 이상, 중소·중견기업 30% 이상
  - ② 중소기업 일반 국가전략기술 생산 비중으로 안분하여 공제
    - \* (예시) 중소기업이 일반 제품 90%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제품 10% 생산 시 90%는 일반투자세액공제, 10%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 □ 현황 및 문제점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따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 디지털 전환 필요성 대두
- 중소·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추진 기업은 중소 16.7%, 중견 19.5%에 불과
  -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 애로 또는 지원 요청사항(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의 디지털 성숙도 조사, '21.12)
    - 자금지원 20.0%, 전문인력 확보 애로 20.0%, 디지털 전환 교육 20.0%, 인력 지원 13.3% 순
  -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애로사항(산업부·중견련,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21.12)
    - 투자비용 문제(46.7%), 성과 불확실(38.4%), 전문인력 부족(32.3%), 관련 인프라 부족(23.1%) 순

- 중견기업(조사 대상 416개)의 93.1%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추진 중인 기업은 19.5%에 불과
  - 디지털 전환 대응 수준은 기초적인 1단계(49.8%)와 미추진 단계인 0단계(32.5%)가 대부분이며,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는 1.2%에 불과
  -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사항은 투자비용 문제(46.7%), 성과 불확실성(38.4%), 전문인력 부족(32.3%), 관련 인프라 부족(23.1%) 순
- <산업부·중견련,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2021. 12>

- 일본은 '21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IT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세제지원

## □ 건의 내용

-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IT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한 2030 NDC 상향('18년 대비 26.3%→40%)으로 인한 부담 증가로 우리 산업 및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우려
  - 특히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상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 상향(기존 6.4%→11.4%)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경제에 악영향 초래 우려
-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 : 한국 26.1, 일본 19.5, 독일 17.0, 유럽 14.0, 미국 10.6
- 탄소감축 관련 기술 수준도 선진국 대비 취약해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2030 NDC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탄소 감축 및 에너지 관련 기술 수준은 주요국 대비 부족하며, 최고기술 수준 국가와 비교해 1~5년의 기술격차 존재

&lt;주요국의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수준 비교(2020)&gt;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탄소저장·포집·이용	80(5년)	100	95	90	82.5
수소·연료전지	75(3년)	93	95	100	70
고효율 태양전지	90(1년)	93	100	97.5	87.5
풍력발전	75(5년)	90	100	76.5	80
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78(4년)	100	100	85	75

\* ( )은 최고기술 국가와 격차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기준 기술수준평가, '21.3월

- 산업계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가 불투명한 상황
- 최근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탄소중립 분야가 추가('23.6월) 됐지만 중견기업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기업의 탈탄소 투자 촉진을 위한 최대 10% 법인세 공제 및 50% 특별 상각 등의 세제 지원제도 운영 중

\*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 '21.6월), KOTRA

- 탄소중립 목표는 산업계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R&D·금융·세제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
-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탄소감축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R&D 개발 등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므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

## □ 건의 내용

- 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R&D			설비투자		
		대기업	중견기업* (코스닥)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제율	현행	20~30%	25~40%	30~40%	3(6)%	6(10)%	12(18)%
	개정안	30~40%			12(18)%		

\* (R&D)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 중견, (설비투자)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대다수의 고용 관련 세제지원의 역진적 구조는 고용 창출 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규모만으로 지원을 축소하여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
  -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등 일부 제도는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지원이 단절
    - \*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청년 취업자는 5년간 90%) ('23.12.31까지, 과세 기간별 200만 원 한도)
    - \*\* 중소→중견 성장 시 배제되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거나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졸초임의 66.3%\*에 불과하여 구인이 어려운 상황
  - \* [대기업 대졸초임] 5,084만원(경총,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21.10월)  
[초기 중견기업 대졸초임] 3,372만원(중견연,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가공)
  - 실제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규채용 애로사항 및 이직 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 \* 중견기업 신규 채용 애로사항 2순위 :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16.4%),  
중견기업 근로자 이직 원인 1순위 : 낮은 임금수준(18.1%)
  - 또한, 구직자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은 타 기업군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아 인재영입 애로가 가중될 우려
    - \* 기업 규모별 제조기업 비중(통계청 '19년 결산 기준 영리법인 통계) : 중소 20.1% 중견 38.5% 대 20.7%
- 구직자의 중견기업 취업을 유인하여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

## □ 건의 내용

-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99년 지주회사제도 허용 이후 정부는 기업구조 조정 원활화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다양한 세제 혜택 부여 등 지주회사 전환 촉진 정책을 추진해 오
  - 지주회사 전환 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세제 혜택이 지배주주에게만 집중된다는 이유로 과세특례 제도를 '21년 말 폐지할 예정이었으며 코로나19로 '23년 말까지 한시적 연장
  -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23년 말까지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24년부터 '26년 말까지 출자로 취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양도일로부터 4년 거치 후 3년 분할과세
- 과세특례 폐지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지주회사 전환 촉진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정책 비일관성 초래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하여 기업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선을 저해할 우려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지주회사는 행위 제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여 보유해야 함
  -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50% 이상
  - 자회사 주주는 지주회사에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자회사 주주가 보유 중이던 자회사 주식의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 문제 발생
  - 미실현 이득에 과세할 경우 세금 부담으로 인해 현물출자를 기피하게 되고, 지주회사는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해 자금 부담이 증가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어렵게 할 것

- 중견기업은 경영 안정성 확보 및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이나, 고물가·고금리·글로벌 긴축정책 등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지주회사 전환을 미루거나 중단

사례
반도체 제조 A사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으로 자본확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차입의 경우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재무 건정성 문제가 있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해 경영권 위협에 노출 우려 증가. 최근 안정적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이나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중단 및 지주회사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건의 내용

- 지배구조 개선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또는 과세특례 일몰 기간 추가 연장

## □ 현황 및 문제점

- 물가안정을 위해 '22.7월부터 '23년까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해당 식료품 생산 기업은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 과세가 면세로 변경됨에 따라 면세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공통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불공제 금액이 급증하여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경영상 부담 가중
- \* 공통매입세액 : 과세 및 면세 겸영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겸영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필요
- \*\* 의제매입세액 :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사례

장류전문기업 B사는 장류의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22년(7.1~12.31) 50억원, '23년 106억원의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면세 이전 5% 이상이던 영업 이익률이 면세 이후('22년 하반기부터) -0.4%로 적자로 전환(약 8억원)하였으며 '23년 적자 규모는 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물가안정을 위한 면세 취지는 공감하나 면세 식료품 생산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책 마련 필요

## □ 건의내용

- 면세 미가공 식료품\* 생산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과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 금액으로 규정하고 소급 적용

\*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계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으로,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보다 매각을 고려하는 상황 발생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국가
55%	일본	30%	벨기에, 독일	10%	아이슬란드, 터키
50%	한국	25%	칠레	7%	폴란드, 스위스(칸톤 레벨)
45%	프랑스	20%	그리스, 네덜란드	4%	이탈리아
40%	영국, 미국	19%	핀란드	0%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34%	스페인	15%	덴마크		
33%	아일랜드	14%	슬로베니아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1

- 국제통계 연보에 따르면 '21년 상속세수는 6조 9,447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452% 증가했으며, 전체 세수 대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

\* 상속세액 및 세수 비중(억원(%)): ('11) 12,586(0.7) → ('16) 19,949(0.9) → ('21) 69,447(1.9)

-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

<OECD 회원국 상속세 비교>

상속세 유지 국가(23개국)	상속세 폐지 국가(15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취득세(19) :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li> <li>• 유산세(4) : 덴마크, 대한민국, 영국, 미국</li> <li>* (배우자 및 직계비속 비과세) 슬로베니아 (배우자 및 직계가족 비과세)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이득세(4)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li> <li>• 추가소득세(3) :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li> <li>• 비과세(7) :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li> <li>• 인지세(1) : 포르투갈(직계가족 면제)</li> </ul>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1

□ 건의 내용

- 직계가족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OECD 평균 15%) 또는 자본이득세 도입

## □ 현황 및 문제점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에 대해 기업승계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
  - \*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국내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봉착, 해외 신시장 개척 등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한 상황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중견기업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및 대를 이은 장기 성장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
- 그러나,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

&lt;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비교&gt;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평균
한국	가업상속 공제 건수(개)	46	58	70	68	67	76	91	103	88	74
	가업상속 공제금액(억원)	325	343	933	986	1,708	3,184	2,226	2,344	2,363	1,601
독일	가업상속 공제 건수(개)	5,123	6,124	8,061	10,141	11,085	11,885	10,747	10,311	11,368	9,427
	가업상속 공제금액(백만유로)	4,412	3,733	3,713	6,439	4,753	5,208	6,881	4,029	3,047	4,691
영국	2011-2018년 평균 2,620건, 1,801백만파운드										

\* 코스닥협회, 중소기업 코스닥기업 가업승계세제, '21.5월

- 특히,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지속 경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
  -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육성할 경우 고용창출 및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기업당 216명을 고용하는데 반해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기업당 1,096명을 고용(중견기업 통계, '21년도 결산기준)

- 해외 주요국들은 직계비속이 기업을 승계할 경우 공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거나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

<주요국의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 혜택>

국가명	직계비속 명목 최고세율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혜택	실제 부담 최고 세율
스페인	34%	가족소유 기업인 경우 주식가치의 95% 공제 (17개 지방정부 중 6개는 상속세 면제)	1.7%
벨기에	30%	일정 지분, 자본금 유지 등 기업승계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3.0%
아일랜드	33%	주식가치의 90% 공제	3.3%
네덜란드	20%	상속 후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요건 충족 시 83%(107만 유로 초과)~100%(107만 유로 이하) 공제	3.4%
독일	30%	지분 및 임금지급 유지 시 85~100% 공제	4.5%
프랑스	45%	환매 금지 조건부 지분 75%까지 공제	11.3%
영국	40%	상장주식 50%, 비상장주식 100% 공제	20.0%

\* EY한영,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8

□ 건의 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매출액 5천억 원 미만 → 1조 원 미만) 및 공제한도(최대 6백억 원 → 최대 1천억 원)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
  -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
-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오랜 기간 가업을 영위해 국가경제에 기여해 왔음에도 가업상속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광업·제조업·건설업 등은 전체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
  - 이에 따라 서비스업은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져 상속공제를 받지 못함

<제조업-서비스업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

광업 (05~08)	제조업 (10~33)	건설업 (41~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교육서비스업(85)
전체	전체	전체	연구개발업(70),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등 5개 업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등 7개 업종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등 4개 업종

- 특히, 서비스업은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 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사례
C사는 인력도급 관련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하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준산업분류 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나 주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 다른 분류코드로 등록되어 있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함

## □ 건의 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 제외 업종\*만 별도 규정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승계시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준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일정 지분율\*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

\*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 상장 30%→20%, 비상장 50%→40% ('23.2 개정)

- 여전히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경영권 분쟁 우려 증가

#### (상장회사 S사 사례)

최대주주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해 피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게 되었으나,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20%에 미달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함

### □ 건의 내용

-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 금전, 유가증권, 토지 등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나,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되어 비상장사는 연부연납 제도 활용에 애로

\*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 비상장 중견기업(83.1%)\*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 마련을 위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어 경영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

\* 중견기업 현황('21년 결산기준) : **비상장 4,555개(83.1%)**, 코스피 453개(8.3%), 코스닥 467개(8.5%), 코넥스 5개(0.1%)

- 비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납세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조세정책의 일관성 결여

-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한 것에 착안하여 환가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있는 기업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획재정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홍석준의원안, 의안번호 제2104118호)

## □ 건의 내용

- 기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 □ 현황 및 문제점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이하 가산세)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를 적용(국세기본법 시행령 §27의 4)
  -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율로 적용\*하고 있어 가산세가 징벌적 성격이지만 연 8.03%를 부과하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음
- \*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의 3

### □ 건의 내용

-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이자율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세무조사의 종류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세금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로 구분
- 조세포탈 혐의가 없는 통상적 정기 세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조세포탈 의혹,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 우려
- 따라서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와 달리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용어를 정비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 건의 내용

- '정기 세무조사'라는 용어를 '정기 세무 컨설팅' 또는 '정기 세무 자문'으로 변경